

## 【 5 】 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4. 3.

제출자 : 양주시장

### 1. 개정 이유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 동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 동법시행규칙(2003.12.3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안 제22조제3항, 안 제44조제2항, 안 제65조제1항, 안 제102조제2항)

- 재산세과세대상중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신설함(안 제33조의1)
-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범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의 재원확보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함(안 제43조)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안 제77조제5항)
- 신고납부 동시에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 안 제64조, 안 제102조제1항)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양주시반설치조례”를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중“(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동조 제1항본문중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동항 단서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동조 제2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조 제4항중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3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1(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6조중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제33조의1 내지 제35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중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을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제8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64조의 제목중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중 “신고납부하여야야”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를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5조제1항제4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 제5호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제77조 제1항 중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등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02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 1(신고 및 납부 등) 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7조제1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lt;신설&gt;</p> <p>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p> <p>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시 리·통장임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과 양주시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p> <p>①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조례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p>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의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 -----  <u>산출세액</u>-----<u>산출세액</u>  -----<u>법 제121조제1항</u>  <u>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u>  <u>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u>  <u>를 합한</u>  -----</p>

&lt;신 설&gt;

## 제33조의 1(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 ----- 제33조의 1 내지 제35조 ----- ----- ----- ----- ----- -----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 ② (생 략)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 규칙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현 행	개 정 안
	<p>(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u>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li> <li>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li> </ol>
<p><u>제64조(신고납부 등)</u>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p> <p>③ (생략)</p> <p>④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u>제64조(신고 및 납부 등)</u> ①-----  -----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  ②-----  -----  -----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④ (생 략)  &lt;신 설&gt;</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등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2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제102조(납기) ①-----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  ②-----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p>
<p>&lt;신 설&gt;</p>	<p>제102조의 1(신고 및 납부등) 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li> <li>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범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li> </ol>

第50條 削除 <94·12·22>

### 第11節 書類의 송달 등

第51條 (書類의 送達) ①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 督促과 滯納處分에 關한 書類는 名義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 送達한다. <改正 62·12·29>

②名義人이 相續財團의 財產管理人인 때에는 그 財產管理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 送達한다. <改正 62·12·29>

③納稅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와 督促에 關한 書類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 送達한다. <改正 62·12·29, 99·12·28>

第51條의 2 (書類 送達의 方法) ①第51條의 規定에 依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依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改正 78·12·6, 2003·12·30 法7013>

②書類를 交付하였을 때에는 送達書에 受取人이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이境遇에 受取人이 署名捺印을 拒否할 때에는 그事實을 附記하여야 한다.

③連帶納稅義務者에게 書類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代表者를 名義人으로 하며, 代表者가 없는 때에는 連帶納稅義務者 중 地方稅 徵收상 유리한 者를 名義人으로 한다. 다만, 納稅의 告知와 督促에 關한 書類는 連帶納稅義務者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7·8·30>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納稅告知書, 納入通知書, 督促狀 또는 催告書를 登記郵便으로 送達한 境遇에 그 書類가 納期限이 經過한 後에 到達되거나 到達한 날로부터 7日內에 納期限이 到達하는 것에 對하여는 그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7日을 經過한 날을 納期限으로 한다. 다만,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의 경우 당해 告知書가 到達한 날에 이미 納期限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到達한 날을 納期限으로 하고, 당해 告知書의 到達後 納期限이 到來하는 때에는 그 到來하는 날을 納期限으로 한다. <改正 74·12·27, 81·12·31>

[本條新設 62·12·29]

第52條 (公示 送達) ①第51條의 2의 規定에 依한 書類의 송달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書類의 요지를 公告한 날부터 14日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改正 62·12·29, 78·12·6, 81·12·31, 99·12·28, 2001·12·29>

1.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서 書類受領을 拒否하였을 때
2. 住所 · 居所 또는 營業所가 國外에 있고 그 送達이 곤란한 때
3.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不分明할 때
4.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는 日刊新聞 또는 揭示板에 揭載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新設 62·12·29, 78·12·6>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의 合算額을 同時に 賦課한다. 다만, 市長・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均等割과 所得割을 각각 賦課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 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97·8·30, 2000·12·29 法6312, 2003·12·30 法7013>

②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7·8·30, 99·12·28, 2003·12·30 法7013>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削除 <99·12·28>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급하여 산출한 납부분성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식에 의하여 徵收한다. <新設 99·12·28. 2003·12·30 法7013>

[全文改正 94·12·22]

**第177條의3 (修正申告納付)** ①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納付한 法人稅割의 市·郡別按分計算稅額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法人稅割을 申告納付한 날부터 60日내에 이를 修正申告納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 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年度分 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納付로 인하여 追加納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4·12·22]

**第177條의4 (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國稅基本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申告·豫定申告 또는 修正申告하는 때에는 그 所得稅割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관할稅務署長에게 함께 申告하고,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特別市·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稅務署長이 國稅基本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한 更正·決定 등에 따라 賦課告知方法에 의하여 所得稅(所得稅法 第81條 및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포함한다)를 徵收하는 경우 그 所得稅割은 第1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得稅賦課의 예에 따라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와 함께 賦課告知한다.

③ 稅務署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年慶 7月末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30 法6838>

④ 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所得稅割의 課稅標準이 된 所得稅를 還給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末日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당해 所得稅割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하는 경우 市長·郡守가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28]

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新設 97·8·30>

[전문개정 73·3·12]

### 第3款 賦課徵收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190條 (徵收方法等) ①財產稅의 徵收는 普通徵收方法에 依한다.

②財產稅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納稅告知書에 建築物・船舶 또는 航空機등으로 區分하여 各個別 當該 課稅標準, 稅額과 그 合計稅額을 記載하여 늦어도 納期開始 5日前까지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法 2945, 84·12·24, 89·6·16, 90·12·31, 93·6·11, 94·12·22>

第191條 (少額不徵收) 財產稅의 稅額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財產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31>

[本條新設 90·12·31]

第192條 (申告義務) ①財產稅의 納稅義務者는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그 財產의 所有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 <新設 63·12·14, 78·12·6>

第193條 削除 <99·12·28>

第194條 削除 <63·12·14>

第195條 削除 <94·12·22>

第196條 (財產課稅臺帳等의備置) 市・郡은 財產課稅臺帳을 備置하고 必要한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 第3節 自動車稅

第196條의2 (自動車의 定義) 이 節에서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된 車輛과 建設機械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建設機械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86·12·31 法3912, 2000·12·29 法6312>

[本條新設 76·12·31 法2945]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期마다 늦어도 納期開始 5日전에 1期分의 納稅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를 新規登録 또는 抹消登録하는 경우와 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 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3·12·27 法 4611, 94·12·22, 97·8·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1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반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법 7013: 시행일 2005·1·1>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稅額(일시에 납부하는 納期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分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年稅額으로 申告納付할 수 있다. <新設 88·12·26, 93·12·27 法 4611, 95·8·4, 98·12·31>

1. 1月 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1月 16日부터 1月 31日까지

2. 第1期分 納期 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

3.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分割納付期間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3月 16日부터 3月 31日까지 또는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

④年稅額이 10萬원 이하의 自動車稅額에 대한 自動車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期分의 賦課時 全額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期分 稅額의 100分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年稅額으로 한다. <新設 90·12·31, 93·12·27 法 4611, 95·8·4>

[本條新設 76·12·31 法 2945]

第196條의7 (承繼取得時의 納稅義務) ①第19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 중에 賣買·贈與 등으로 인하여 自動車를 承繼取得한 者가 自動車所有權移轉登録를 하는 때에 所有期間에 따른 自動車稅 日割計算申請을 하는 경우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讓受人の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納期가 있는 달에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은 自動車所有權移轉登録를 申請하는 때에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申請書에 所有權變動事實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첨부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③自動車를 賣買·贈與 등으로 承繼取得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第196條의6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自動車稅를 제외한다)중 讓渡人이 所有한 기간에 해당하는 自動車稅의 納稅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第196條의6第1項 本文의 規定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立한 이후에 自動車를 賣買・贈與 등으로 承繼取得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9·12·28〕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 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12·30 법7013: 시행일 2005·1·1〕

第196條의8 (隨時賦課時의 稅額計算) ①自動車를 新規登録하거나 抹消登録한 경우에는 市·郡은 그 取得한 날 또는 사용을 廢止한 날이 속하는 期分의 自動車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②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新設 97·8·30〕

③第196條의7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日割計算申請을 한 경우에는 讓渡日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讓渡人과 讓受人에게 각각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让渡人の 同意가 있는 때에는 이를 让受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28〕

④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법7013: 시행일 2005·1·1〕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规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自動車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新設 79·12·28, 90·12·31, 97·8·30, 99·12·28〕  
〔本條新設 76·12·31 法2945〕

## 第196條의9 削除 〔95·12·6〕

## 第196條의10 및 第196條의11 削除 〔95·8·4〕

第196條의12 (自動車登録證의 回收 등) ①自動車稅의 納付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는 道知事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自動車登録證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交付한 自動車登録證의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의 領置를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登録業務가 市長·郡守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그 自動車登録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自動車登録證의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을 領置할 수 있다. 〔改正 86·12·31 法3912, 94·12·22, 99·12·28〕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道知事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自動車登録證의 回收節次와 自動車登録番號板의 領置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31 法3912, 99·12·28>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 13 (納稅證明書 등의 제시)** 自動車管理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市・道를 날리하는 사용분거지의 變更登錄에 한한다) 또는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登錄官廳에 自動車稅領收證 등 自動車稅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2002·12·30 法6838>

[本條新設 93·12·27 法4611]

**第196條의 14 (滞納處分)** 第196條의 5 내지 第196條의 8에 規定된 自動車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한 金額에 不足金額이 있을 때에는 즉시 滞納處分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 15 (免稅規定의 排除)** 다른 法律 중에 規定된 租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은 自動車稅에 關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 第3節의 2 走行稅

**第196條의 16 (納稅義務者 등)** 走行稅는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에 대한 自動車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撥發油・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이하 이節에서 “課稅物品”이라 한다)에 대한 交通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交通稅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를 말한다)에게 賦課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7 (稅率)** ①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분의 175로 한다. <改正 2000·12·29 法6312, 2003·12·30 法7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法6312>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8 (신고 및 납부 등)** ①走行稅의 納稅義務者는 交通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付期限내에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각 市・郡이 賦課할 走行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改正 2003·12·30 法7013>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12·30 법7013&gt;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의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走行稅(1. 利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日까지 市·郡別 自動車稅 徵收稅額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 및 方법에 따라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9 (異議申請 등의 特例) ① 走行稅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申請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96條의 18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를 그 處分廳으로 본다.

② 走行稅의 過誤納金이 발생된 경우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20 (交通稅法의 準用) 走行稅의 賦課·徵收와 관련하여 이 節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交通稅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196條의 18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를 交通稅法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 또는 稅關長 등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28〕

제196조의 21 (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법7013〕

## 제 4 절 농업소득세

## 제 1 관 통 칙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2. 製造場에 現存하는 담배가 公賣·競賣 또는 破產節次 등에 의하여 换價되는 때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3 (開業·廢業 등의 申告)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製造場 또는 輸入販賣業을 開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 所在地(製造場의 경우에는 당해 製造場 所在地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製造場 또는 輸入販賣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申告事項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4 (廢業時의 在庫담배의 使用計劃書 제출)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廉業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在庫담배의 使用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5 (記帳義務)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는 담배의 製造·輸入·賣渡 등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記帳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2001·4·7>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6 (신고 및 납부 등) ①製造者は 매월 1일부터 末日까지 製造場에서 撥出한 담배에 대한 第228條 및 第229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率에 따라 算出한 稅額(이하 이 節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 의하여 다음달 末日까지 각 市·郡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2001·4·7, 2003·12·30 法7013>

②輸入販賣業者は 매월 1일부터 末日까지 保稅區域에서 撥出한 담배에 대한 算出稅額을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入販賣業者の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輸入販賣業者の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수입담배의 담배消費稅에 대한 각 市·郡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改正 2001·4·7, 2003·12·30 法7013>

③第2項의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담배消費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담배消費稅의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28>

④第2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稅關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消費稅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2003·12·30 法7013&gt;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7 (加算稅)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 또는 不足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인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改正 2001·4·7, 2003·12·30 法7013>

1.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한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行爲를 한 경우
2.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廃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233條의4의 規定에 의한 使用計劃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第233條의5의 規定에 의한 記帳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帳한 경우
4. 第233條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算出稅額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算出稅額에 미달한 경우 그 稅額이 적고故意性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 또는 不足稅額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改正 94·12·22, 2001·4·7, 2001·12·29>

1. 第231條 및 第2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된 담배를 당해 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賣渡·販賣·消費 기타 處分을 한 경우
  2.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第23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第233條의9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控除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課稅標準額의 基礎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隱蔽하거나 僞裝한 경우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算出稅額 및 不足稅額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課稅標準과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다. <改正 2001·4·7>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8 (隨時賦課) ① 市長·郡守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33條의6의 規定에 불구하고 關係證憑資料에 의하여 隨時로 그 稅額을 決定하여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5. 別定郵遞局이 公用 또는 公公用으로 사용하는 土地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道路·河川·堤防·溝渠·溜池·史蹟地 및 墓地
  7. 保安林 기타 公益上 綜合土地稅를 賦課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
- [本條新設 89·6·16]

第234條의 13 및 第234條의 14 削除 (94·12·22)

### 第2款 課稅標準 및 稅率

第234條의 15 (課稅標準) ①綜合土地稅의 課稅標準은 綜合合算課稅標準·別途合算  
課稅標準 및 分離課稅標準으로 구분한다.

②綜合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現재 納稅義務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國의 모든  
土地中 別途合算 또는 分離課稅의 대상이 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로서 大統  
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를 재외한 土地의 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土地의 價額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改正 94·  
12·22, 95·12·6, 98·12·31, 2000·12·29 法6312>

1. 이 法 또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土地稅가 非課稅 또는 免除되는  
土地의 價額
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土地稅가 輕減되는 土地의 輕減  
比率에 해당하는 土地價額
3. 工場用地·田·畜·果樹園 및 牧場用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價額
4. 山林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林野 및 宗中所有 林野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林野의 價額
5.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놀이場(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用 土地의 價額과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別莊·高級娛樂場用 土地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價額 및 第188條第1項第2號(1)의 規定에 의  
한 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土地의 價額
6.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와 유사한 土地 및 綜合土地稅를 分  
離課稅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의  
價額

③別途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現재 納稅義務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國의 모든  
建築物의 附屬土地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의 價額을 合算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④分離課稅標準은 第2項第3號 내지 第6號의 價額으로 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은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  
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提供한 土地價格比準表을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  
體의 長이 決定告示한 課稅標準額 適用比率을 依하여 算定한 價額으로 한다. <新  
設 95·12·6>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者

②削除 &lt;94·12·22&gt;

〔本條新設 86·12·31 法3878〕

**第246條 (納稅地)** 事業所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81·12·31, 88·4·6, 94·12·22>

1. 財產割은 課稅基準日 現在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 賦課한다.
2. 從業員割은 매월 末日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事業所를 廢業하는 경우에는 廢業하는 날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 賦課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47條 (課稅標準)** 事業所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4·12·22>

## 1. 財產割

課稅基準日 現在의 事業所 延面積

##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지급한 당해 月給與의 總額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48條 (稅率)** ①事業所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稅率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4·12·24, 91·12·14>

1. 財產割 : 事業所 延面積 1제곱미터당 250원

2. 從業員割 : 從業員 紬與總額의 100분의 0.5

②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稅의 稅率을 第1項의 稅率 이하로 정할 수 있다. &lt;改正 91·12·14&gt;

③廢水 또는 產業廢棄物등을 排出하는 事業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排出事業所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稅率의 100分의 200으로 한다. &lt;新設 91·12·14&gt;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49條 (免稅點)** ①당해 事業所의 從業員數가 50人이하인 경우에는 從業員割을, 당해 事業所의 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財產割을 각각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84·1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稅點適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50條 (徵收方法과 納期)** ①事業所稅는 申告納付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다. <改正 94·12·22>

②從業員割의 納稅義務者는 매월 납부한 稅額을 다음달 10日까지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2003·12·30 法7013>

③財產割의 納稅義務者는 매년 납부한 稅額을 7月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納期로 하여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2002·12·30 法6838. 2003·12·30 法7013>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247조 및 세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1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51條 (申告義務) ①事業所稅의 納稅義務者 또는 그 事業所用建築物의 所有者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職權으로 調査하여 事業所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 <改正 81·12·31. 88·4·6>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252條 削除 <94·12·22>

#### 第4節 地域開發稅

第253條 (課稅對象) 地域開發稅는 地域의 均衡開發 및 水質改善과 水資源保護 등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發電用水(揚水發電用水을 제외한다)·地下水(湧泉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地下資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埠頭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課稅對象으로 한다. <改正 94·12·22>

(本條新設 91·12·14)

第254條 (納稅義務者) 地域開發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22>

1. 發電用水: 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水力發電(揚水發電을 제외한다)을 하는 者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lt;2003·12·11 法6997&gt;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lt;2003·12·30 法7013&gt;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세법시행령

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7·1 대령12208, 96·11·6, 98·7·16>

[본조신설 76·12·31]

제146조의13 (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본조신설 76·12·31]

### 제 3 절의2 주행세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로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35>

[본조신설 2002·6·29]

제146조의15 (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본조신설 99·12·31]

제146조의16 (안분기준)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세법시행령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 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⑤제 1 항제 2 호라목 및 바목과 제 2 항제 4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 1 항제 3 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 2 항제 5 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96·4·27, 97·10·1, 99·12·31, 2002·12·30>

[본조신설 89·8·24]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①법 제234조의15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91·5·23>

②법 제234조의15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95·12·30>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세법시행령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98·7·16>

③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시행일 2006·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95·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시행일 2006·1·1>

⑤ 삭제 <2003·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89·8·24]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 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89·8·24]

제194조의18 (세액안분방법)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삭제 <94·12·31>

제210조 (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2·31]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31, 91·12·31>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4·12·31, 2002·12·30>

[본조신설 76·12·31]

제211조의2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사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전문개정 94·12·31]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4·12·31, 98·7·16>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76·12·31]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214조 (과세대장등재 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2·31)

|215조 삭제 <94·12·31>

#### 제 4 절 지역개발세

|216조 (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95·12·30, 98·7·16, 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 2. 지하수

가.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1·12·31)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세법시행령

## 부 칙 &lt;2003·6·30 대령18035&gt;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lt;2003·6·30 대령18039&gt;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 부 칙 &lt;2003·6·30 대령18044&gt;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 칙 &lt;2003·9·29 대령18108&gt;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 부 칙 &lt;2003·11·29 대령18146&gt;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 2 조 내지 제15조 생략

## 부 칙 &lt;2003·12·30 대령18194&gt;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8,4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제15585호

판

보

2003.12.31. (수요일)

마. 증원된 출입국관리공무원 43인(4급 1인, 5급 3인, 6급 12인, 7급 12인, 8급 11인, 9급 4인)을 배정함(별표 12). <법무부 제공>

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

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과 동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마목중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의한다.

##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12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영”을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3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중 “별지 제7호의5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

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85호

부

면

제55조의3(신고 및 납부) ①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서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 서식 또는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특별징수내역 통보는 별지 제5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6조의2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래저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래저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6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65조의2제1항중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 제6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30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5중 "별지 제76호서식 및 동부표에 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대장집계부를"을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세대장을"로 하고,